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22-84
----------	---------

제출년월일 : 2022년 10월 일

제 출 자 : 강 서 구 청 장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사항과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사항 등을 조례에 반영함으로써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시행령에서 규정하던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 대상 재산을 자치단체 조례로 위임함에 따라 해당조문 신설(안 제10조제2항)

나. 사용·수익허가→사용허가, 실경작자→농업인 등 개정된 법령과 일치하게 용어 정비(안 제4조, 제7조, 제17조의2, 제18조, 제19조, 제20조, 제21조, 제25조, 제29조)

다. 국민권익위원회 「정부기관 청소근로자 휴게제도 개선」 권고에 따라 지방청사 표준 설계면적기준에 청소근로자 휴게시설 배정 명시(별표 1)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1)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
- 2)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입법예고(2022. 8. 17. ~ 2022. 9. 6.) 결과: 의견 없음
- 2) 부패영향평가: 원안 동의
- 3) 규제사전심사: 해당 없음
- 4) 성별영향평가: 개선사항 없음
- 5) 신·구조문 대비표: 별첨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전단 중 “법 제10조 및 영 제7조”를 “법 제10조의2”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영 제7조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해야하는 재산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
 - 가. 취득의 경우: 10억원
 - 나. 처분의 경우: 10억원
2. 토지의 경우 1건당 토지 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토지
 - 가. 취득의 경우: 1건당 1천제곱미터
 - 나. 처분의 경우: 1건당 2천제곱미터

제14조의 제목 “(무상사용 허가대상 재산)”을 “(무상 사용허가 대상 재산)”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무상사용·수익허가대상”을 “무상 사

용허가 대상”으로, “유상사용 허가”를 “유상 사용허가”로 한다.

제17조의 제목 “(사용·수익허가의 제한)”을 “(사용허가의 제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용·수익허가”를 “사용허가”로 한다.

제17조의2의 제목 “(수익의 방법에 따른 사용·수익허가 대상)”을 “(수익의 방법에 따른 사용허가 대상)”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용·수익허가”를 “사용허가”로 한다.

제18조의 제목 “(사용·수익허가)”를 “(사용허가)”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용·수익 허가”를 “사용허가”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및 제6호 중 “사용·수익허가”를 각각 “사용허가”로 한다.

제19조의 제목 “(사용·수익 허가부의 비치)”를 “(사용허가부의 비치)”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전단 중 “사용·수익 허가부”를 “사용허가부”로 한다.

제20조제1항 중 “사용·수익허가”를 “사용허가”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사용·수익허가”를 “사용허가”로 한다.

제21조 중 “사용수익허가”를 “사용허가”로 한다.

제25조제4항제2호 중 “실경작자”를 “농업인”으로 한다.

제2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용·수익허가”를 “사용허가”로 한다.

별표 1의 제1호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마. 청소근로자 휴게시설 등 타법상의 의무시설은 해당법률에 따라 배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지방청사 표준 설계면적기준

1. 구의 본청

가. 직무관련 1인당 면적기준

(단위 : m²)

구분 기관별	기관장실	부기관장실	실·국장실	실·과장실	담당 또는 계장	직원
구본청	99	38.88	38.88	17.92	7.65	7.2
동청사	23	14.80	-	-	7.65	7.2

나. 부속공간 면적

(단위 : m²)

실명		설계기준					비고
회의실 (사용인원)	24명 미만	25~49명	50~99명	100~149명	150~199	200명이상시 면적 = 0.8m ² ×사용인원	
	4~2.4m ² /인	2.6~1.5m ² /인	2~1.2m ² /인	1.6~1m ² /인	1.2~0.9m ² /인		
상황실		2.64 × (과장급 이상 수 + 동장 수)					회의실과 겸용
서비스 및 동선 부분	화장실	100명 미만	100명~200명	200명 이상			
		0.43m ² / 인	0.40m ² / 인	0.33m ² / 인			
	엘리베이터	(12.87~19.6m ²) × 대수					
식당		1.63m ² × 공무원 수 × 0.3					
휴게실		2.0m ² × 공무원 수 × 0.15					
민원실		{(6.55m ² ×민원담당공무원 수)×1.1} + {(0.13m ² ~0.2m ² ×민원인 수×0.5)}					민원인 공간확장 가능
숙직실	1인	2~3인	4인 이상				
	15.12m ² / 인	11.52m ² / 인	8.64m ² / 인				
자료실		(0.3~0.4m ²) × 공무원수					
창고		0.72m ² /인 ~ 0.85m ² /인					
전산실		9.79m ² × 담당직원 수 × 1.2					
민방위대피시설		개소당 660m ² 이상					평시 충무시설로 이용

다. 설비관계 면적

(단위 : m²)

실 명		설 계 기 준					
공조기계실	연 면 적	~3,000	3,000~7,500	7,500~13,000	13,000~18,000	18,000~23,000	23,000~
	연면적대(%)	4.5~7.0	4.0~6.0	3.5~4.5	3.0~4.0	2.5~3.5	2.3~2.8
층장비실	사무공간	500m ²		800m ²		1,000m ²	
	층장비실	6.6m ²		8.4m ²		10.2m ²	
주장비실	사무공간	~1,000	1,000~4,000	4,000~8,000	8,000~12,000	12,000~16,000	
	주장비실	14	37	74	111	149	
	사무공간	16,000~20,000	20,000~24,000	24,000~28,000	28,000~32,000		
	주장비실	186	223	260	297		

라. 공용면적 : [(직무면적+부속공간면적+설비관계면적) x 30~40%]

마. 청소근로자 휴게시설 등 타법상의 의무시설은 해당법률에 따라 배정한다.

2. 구의회 청사

(단위 : m²)

구 분	실 명	면 적 기 준	비 고	
의 원 실	의 장 실	집행기관장실 면적 준용		
	부의장실	집행기관 부기관장실 면적 준용		
	위원장실	집행기관 실·국장실, 실·과장실 면적 준용	구 위원회 수 : 3개	
회 의 실	본회의장	의원 수 x 5 + 방청객 수* x 1.5m ² 이상		
	회 의 실	의원 수 x 3.3m ²	면적범위내에서 적절한 규모로 분할	
	위원회실	의원 수 x 8.2m ²	위원회 수 : 3개	
부 속 공 간	c	사무국장실	38.88 ~ 64.0m ²	
		사 무 실	직원 수 x 7.2m ²	
		자료실 및 도서실	198 ~ 297m ²	
	d	대기실	의 원	의원 수 x 2.5m ²
			기 자	50m ²
			운전기사	운전기사 수 x 1.8m ²
	d	휴게실	의 원	의원 수 x 2m ²
			직 원	직원 수 x 2m ²
			방청객	방청객 수* x 2m ²
		당 직 실	2인실 기준 15m ²	
화 장 실	구 : 44~46m ²			
기 타	예비실(50m ²)을 1개소이상 확보	창고 / 예비실 등		
연계공간	로비·복도·계단	(a + b + c) x 30~40%		

* 방청객 수 = 인구 수 x 0.000015 + 50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0조(공유재산 관리계획) ① <u>법 제10조 및 영 제7조에 따라</u> 구청장은 구의회에서 예산을 의결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세워 구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때도 또한 같다.(개정 2013.7.3 ,2014.1.29., 2015.11.4)</p> <p><u><신 설></u></p>	<p>제10조(공유재산 관리계획) ① <u>법 제10조의2</u>----- ----- ----- ----- ----- ----- ----- ----- -----</p> <p>② <u>영 제7조제1항에 따라</u>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해야하는 재산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u>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u></p> <p style="margin-left: 20px;"><u>가. 취득의 경우: 10억원</u></p> <p style="margin-left: 20px;"><u>나. 처분의 경우: 10억원</u></p> <p>2. <u>토지의 경우 1건당 토지 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토지</u></p> <p style="margin-left: 20px;"><u>가. 취득의 경우: 1건당 1천제곱미터</u></p> <p style="margin-left: 20px;"><u>나. 처분의 경우: 1건당 2천제곱미터</u></p>

② (생략)

제14조(무상사용 허가대상 재산)

①공유재산인 토지 위에 건물 등 시설물을 설치하여 기부채납한 경우의 무상사용·수익허가 대상 재산은 기부채납된 재산에 한하여야 하며, 토지에 대하여는 유상사용 허가하여야 한다.

② (생략)

제17조(사용·수익허가의 제한)

① (생략)

② 행정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사용·수익허가 하여서는 아니된다.

1. 2. (생략)

제17조의2(수익의 방법에 따른 사

용·수익허가 대상) 영 제13조 제3항제18호에 따라 수익의 방법으로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가 가능한 기구 또는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18조(사용·수익허가) 행정재산

을 사용·수익 허가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제14조(무상 사용허가 대상 재산)

①-----

----- 무상 사용허가 대상 -----

----- 유상 사용허가-----.

② (현행과 같음)

제17조(사용허가의 제한) ① (현

행과 같음)

② -----

----- 사용허가-----
-----.

1. 2. (현행과 같음)

제17조의2(수익의 방법에 따른 사

용허가 대상) -----

----- 사용허가-----

-----.

제18조(사용허가) -----

----- 사용허가-----
-----.

1. ~ 4. (생략)

5. 사용·수익허가 재산의 보존 의무

6. 사용·수익허가 재산에 대한 부과금의 사용자 부담

7. (생략)

제19조(사용·수익 허가부의 비치) 재산관리관은 반드시 행정 재산의 사용·수익 허가부를 비치하고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이는 전산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제20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 재산관리관이 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행정재산을 위탁하는 때에는 법 제27조제4항 및 제5항, 영 제19조 및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사용·수익허가의 대상범위와 허가기간 및 연간사용료·납부방법 등을 위탁계약에 포함하여야 한다.

② (생략)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행정재산을 위탁받은 수탁자가 사용·수익허가 받은 재산에 대하여 사용료를 납부하고, 제3자에게

1. ~ 4. (현행과 같음)

5. 사용허가-----

6. 사용허가-----

7. (현행과 같음)

제19조(사용허가부의 비치) -----

----- 사용허가부-----

제20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 -----

----- 사용허가-----

② (현행과 같음)

③ -----
----- 사용허가-----

전대하는 때에는 수탁자가 정하는 일정한 사용료와 관리비용은 전대 받은 자에게 부과·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가 징수한 사용료와 관리비는 수탁자의 수입으로 한다.

④ ~ ⑥ (생략)

제21조(일반재산 대부의 준용) 사용료의 요율, 일시사용허가, 전세금의 평가 등 그 밖의 사용수익허가에 대한 사항은 제22조부터 제34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5조(대부료의 요율) ① ~ ③ (생략)

④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한다.

1. (생략)
2. 농경지를 실경작자에게 경작의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

3. ~ 11. (생략)

⑤·⑥ (생략)

제29조(대부료의 감면) ① (생략)

-----.

④ ~ ⑥ (현행과 같음)

제21조(일반재산 대부의 준용) --

----- 사용허가-----

--.

제25조(대부료의 요율)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

1. (현행과 같음)
2. ----- 농업인-----

--

3. ~ 11. (현행과 같음)

⑤·⑥ (현행과 같음)

제29조(대부료의 감면) ① (현행과 같음)

략)

②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3조의2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3항에 따라 외국인학교 운영을 목적으로 하는 자에게 공유재산에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 하는 경우의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다.

1. ~ 3. (생략)

③ ~ ⑤ (생략)

[별표 1]

지방청사 표준 설계면적기준

1. 구의 본청

가. ~ 라. (생략)

<신설>

2. 구의회 청사

(생략)

과 같음)

②-----

----- 사용
허가-----

-----.

1. ~ 3. (현행과 같음)

③ ~ ⑤ (현행과 같음)

[별표 1]

지방청사 표준 설계면적기준

1. 구의 본청

가. ~ 라. (현행과 같음)

마. 청소근로자 휴게시설 등 타법상의 의무시설은 해당법률에 따라 배정한다.

2. 구의회 청사

(현행과 같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 2022. 6. 29.] [법률 제18661호, 2021. 12. 28., 타법개정]

- 제10조의2(공유재산관리계획)**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에서 예산을 의결하기 전에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에 따라 매년 다음 회계연도의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 확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이 취소되거나 일부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2. 4., 2015. 1. 20., 2021. 4. 20.>
- ②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회계연도 개시 50일 전까지,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5. 1. 20., 2021. 4. 20.>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회계연도 중에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긴급하게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회계연도 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출 절차는 「지방자치법」 제55조에 따른다. <신설 2015. 1. 20., 2021. 1. 12., 2021. 4. 20.>
- ④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공유재산의 범위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 1. 20., 2021. 4. 20.>
- ⑤ 공유재산관리계획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았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제6호에 따른 중요 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5. 1. 20., 2021. 1. 12., 2021. 4. 20.>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시행 2023. 1. 1.] [대통령령 제32601호, 2022. 4. 20., 일부개정]

제7조(공유재산관리계획) ① 법 제10조의2제1항 전단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 한다)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 [매입, 기부채납, 무상 양수, 환지(換地), 무상 귀속, 교환, 건물의 신축·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 출자 및 그 밖의 취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처분(매각, 양여, 교환, 무상 귀속, 건물의 멸실, 출자 및 그 밖의 처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개정 2022. 4. 20.>

1.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따른 1건당 기준가격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재산
2.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따른 1건당 기준면적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면적 이상인 토지